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51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이수진 · 최혁진 · 송옥주
남인순 · 민병덕 · 전진숙
김정호 · 백혜련 · 이언주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송무·법률사무를 담당하여 법률서비스 취약 분야의 공백을 메우는 인력이나, 육군 현역병 기준 2배가 넘는 복무기간 차이 등으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공익법무관의 복무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병무청장에 제공하여 공익법무관의 병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공익법무관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복무실태 조사와 조사결과에 대한 병무청장의 자료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공익법무관의 병적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2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9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3년으로”를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복무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복무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해에는 그 실태조사로 복무실태조사 및 결과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병적(兵籍) 관리 등 병무행정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복무실태조사 결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복무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편입 시기별 단축기간을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u>3년</u> 으로 한다.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② ~ ④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복무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복무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해에는 그 실태조사로 복무실태조사 및 결과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병적(兵籍) 관리 등 병무행정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복무실태조사 결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보수 등)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u>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u>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u>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u>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복무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4조(보수 등) ①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적정한</u>----- -----. <u><삭 제></u>
---	--